

사서자격제도의 변화 추이 및 개선 방향에 관한 고찰*

Librarian Certification in Korea: History and Future Directions

곽 동 철(Dong-Chul Kwack)**

〈 목 차 〉

- | | |
|-----------------------------|----------------------------------|
| I. 서론 | 5.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개정(2003)과 이후의 시기 |
| II. 사서자격제도의 도입 및 성립 | 6. 『도서관법』(2006)의 시기 |
| III. 사서자격제도의 시기별 변화 추이 | IV. 사서자격의 취득 조건 및 양성 체계 |
| 1. 『도서관법』(1963)의 시기 | 1. 사서자격 취득과 교육 체계 |
| 2. 『도서관법』의 개정(1987)과 이후의 시기 | 2. 사서자격증 발급 및 소지 현황 |
| 3. 『도서관진흥법』(1991)의 시기 | 3. 사서의 양성과 취업 문제 |
| 4. 『도서관및독서진흥법』(1994)의 시기 | V. 결론 |

초 록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와 양성 체계는 도서관 주변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도서관법의 제정과 일부 또는 전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연구는 도서관법과 사서직원 등의 자격 제도 및 양성 체계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을 조사·분석한 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기술한 것이다. 첫째, 그 변화 추이를 고찰하고, 둘째, 사서자격제도와 시행 효과를 살펴보고, 셋째, 사서자격제도 및 양성 체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략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키워드: 도서관법, 사서양성체계, 사서자격제도, 사서자격

ABSTRACT

Librarian certification and credible library education in Korea are defined by law(s). The law(s) has continuously been amended or reformed to meet the changes in society as well as library surroundings to date. This research investigates and analyses the evolving traces of librarian certification and credible library education law(s), and summaries them as following: first, the trend in the changes is reviewed, second, whether the conditions to grant librarian certificates reflected on the laws have influenced the quality or professional capability of the librarians is probed, finally, problems of current librarian certification and credible library education are elicited, and desirable future directions are suggested.

Keywords: Korea Library Law, Educational System for Librarians, Credential System for Librarians, Librarian's Certificate

* 이 논문은 2008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대구: 경북대학교, 2008.11.28)에서 발표한 원고를 요약·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kdc.kdc@hanmail.net)

• 접수일: 2009년 2월 19일 • 최초심사일: 2009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9년 3월 21일

I. 서론

오늘날 지식정보사회의 진입과 함께 도서관 및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고,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행태를 적절히 반영한 사서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소양 계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6호(도서관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및 동법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의거한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및 그에 따른 도서관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 마련이라는 문제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2008년 7월 수립·시행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에도 그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도서관의 시설, 장서,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적 차원의 도서관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선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사서자격제도는 1989년 제정된 이래 단순히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및 준사서로서 직급만 구분된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변한 국내·외 도서관 및 정보환경에서 요구되는 사서직의 전문적 소양과 직무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도서관 현장과 문헌정보학계에서도 도서관의 관종과 업무 영역에 따라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직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서자격 구분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문헌정보학 표준 교과과정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사서자격증이 국가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시험과 같은 자격검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 즉, 사서자격증은 단순히 문헌정보학 학위취득자 혹은 소정의 관련 학점 이수자에게 자동적으로 발급되거나, 대학 이외의 단기교육과정을 통해서도 발급되고 있다. 더욱이 학부제 실시 이후 2급 정사서를 위한 취득학점이 30~36학점밖에 되지 않고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는 상기 과정을 통한 자격소지자의 양산 및 그에 따른 국가자격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였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서자격제도의 문제점은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사회적 인식과 처우 요구의 어려움, 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취업률의 하락과 같은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정보전문가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서들이 적절한 수준의 핵심 지식, 기술, 소양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서직원들도 전문직의 발전과 도서관 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고, 자신의 경력, 수준과 능력에 적절한 사회적 직위, 연봉 및 신분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재교육 및 자아계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의 성립 과정과 변화 추이 및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 전문직으로서 사서의 자질과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새로운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사서자격제도의 도입 및 성립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에 근대적 도서관이 설립된 이래 가져온 사서자격제도의 성립과 변천과정을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발표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¹⁾²⁾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사서자격제도의 연원을 기점으로 하여 그동안 채택되어 온 사서의 교육 및 양성제도의 특성, 사서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현황 요구의 변동, 법적·제도적 발전 및 문제점 등의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사서자격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서교육은 조선교육회가 1931년에 주최한 제1회 강습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⁴⁾ 그 이후 1939년에 결성된 조선도서관연맹이 사서 교육 관련 강습회를 주도하였지만, 실제로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신인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이 교육을 주관하였다. 이 강습회는 1943년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해방과 동시에 국립도서관의 관리와 운영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이재욱 관장과 박봉석 부관장은 1945년 말부터 미군정청 학무국장이었던 록카드(E.N. Lokard) 등과 협의하여 국립도서관 소속으로 조선도서관학교를 설립하여 1946년 4월 1일에 개교하였다. 후에 국립도서관학교로 개칭하게 된 조선도서관학교의 설립을 계기로 한국인 스스로 사서직원 양성교육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1946년 8월 31일 제1회 졸업생 20명을 배출하였다. 그 다음 해부터는 1년 과정으로 운영하였으나, 한국전쟁의 발발로 4년간 총 77명이 배출되고 문을 닫게 되었다.

또한 1947년 4월에는 국립도서관과 조선도서관협회가 공동으로 제1회 ‘도서관사업 강습회’를 10일간 개최하였고, 여기에는 모두 57명의 현직사서가 참여하였다. 이어서 1948년 10월에 제2회, 1950년에는 제3회 강습회가 개최되었으나 역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였다. 당시 도서관계에서는 해방과 함께 도서관의 운영권이 일본인으로부터 한국인으로 넘어옴에 따라 부족한 사서직원의 양성을 시급한 과제로 여기게 되었고, 이 같은 장·단기 교육을 통해 사서를 양성하고, 도서관 운영을 정상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이후 연세대학교에 국내 최초의 4년제 도서관학과 및 대학원 석사과정⁵⁾이 1957년에 개설됨으로써 고등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이 시작되었고, 아울러 현직 도서관 종사자의 교육을 위해 한국도서관학당도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의 지원 및 당시 교육사절단으로 내한하여 연세대학교에 파견되었던 조지피바디사범대학의 도서관계 인사들의 도움이 지대하였다. 이는 그때까지

1) 광동철, “사서자격 제도의 변화 추이 및 개선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8 동계학술발표대회(대구: 경북대, 2008.11.28-29), pp.1-35.

2) 郭东哲, “韩国的司书培养体系和资格制度,” 图书情报工作, 第52卷 第6期(2008. 6), pp.22-28.

3)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60년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6).

4)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60년사(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5).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1호)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수준에 머물렀던 도서관학 교육을 대학 및 대학원 수준으로 격상시키면서, 사서 양성 교육의 질과 품격을 높이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대학에서의 도서관학과 개설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를테면, 이화여대(1959년), 중앙대(1963년), 성균관대(1964년)가 각각 도서관학과를 설치하여 사서양성을 위한 학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1963년 『도서관법』(법률 제1424호)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사서 자격제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경북대(1974년), 숙명여대(1976년), 대구가톨릭대(1976년), 강남대(1978년) 및 1979년에 청주대, 신라대, 충남대에 각각 학부과정으로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었다. 이어서 1980년대부터 양적 확대를 초래하여 전국적으로 모두 33개 대학에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 및 8개 전문대학의 문헌정보과(도서관과)가 설치·운영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⁵⁾

그동안 도서관법도 도서관 주변 환경의 변화와 함께 몇 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부 개정 과정을 거쳐 2006년 지금의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으로 공포되었다. 다음에서는 ‘도서관법’에 규정된 사서자격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사서 등의 자격요건 및 시행효과, 사서자격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 사서자격제도의 시기별 변화 추이

1. 『도서관법』(1963)의 시기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는 1963년 10월 28일자로 제정·공포된 『도서관법』(법률 제1424호)에 의해 최초로 확립되었다.⁶⁾ 이 법률의 제6조 제2항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의 자격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에 근거하여 1965년 3월 26일자로 제정된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86호) 제4조 [사서직원의 자격과 구분]의 제1항에서 사서직원의 자격 유형을 ‘정사서와 준사서’로 구분하고,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사서와 준사서의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이 시행령은 1967년 3월 27일자로 개정된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64호)과 1969년 11월 3일자로 개정된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4191호)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5조 [도서관업무의 강습]에 의거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도서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교양강습 실시의 요청이 있거나 동법 제

5) 전문대학 8개교 가운데 계명문화대학과 동부산대학이 폐교가 되고, 현재 6개교의 대학(대림대학, 동원대학, 부산여자대학, 숭의여자대학, 인천전문대학, 창원전문대학)에서 사서를 양성하고 있음.

6) 이병목, 『도서관법규총람 전2권』(서울 : 구미무역출판부, 2005) 및 이하 도서관 관련 법규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함.

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업무에 관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사서직원의 자격과 구분] ①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 중 국·공립의 공공도서관 또는 국·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의 자격은 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며 사립의 공공도서관 또는 사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은 그 자격에 따라 이를 정사서와 준사서로 나눈다.

② 정사서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1. 대학의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3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준사서로서 사서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1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1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③ 준사서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1. 초급대학졸업자(실업고등전문학교졸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15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2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사서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3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지정과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동법시행령 부칙에서 국립도서관학교의 졸업자와 연세대학교부설 한국도서관학당(동대학교부설 도서관학교를 포함한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8주간 이상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받은 자는 정사서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초급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10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3년 이상 사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도서관실무실습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도 준사서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이 시행령의 시행당시 국·공립의 공공도서관 또는 국·공립의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공무원(사서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1967년 3월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1호)

27일자로 개정된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64호) 제4조 [사서직원의 자격과 구분]의 제1항 및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1년 이내에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전형을 거쳐 정사서 또는 준사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1969년 11월 3일자로 개정된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4191호)에서 제4조 [사서직원의 자격과 구분] 및 제6조[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 등의 배치 기준]의 내용은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전술한 도서관법시행령에 대해 1966년 3월 23일자로 제정·공포된 『도서관법시행규칙』(문교부령 제172호) 제5조 [강습기관의 지정범위] 및 제6조[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사서직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도서관학의 강습기관 및 교육과정을 규정하였다. 즉, 도서관학과가 설치된 대학, 국립중앙도서관, 문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도서관단체는 도서관학의 강습기관으로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이러한 도서관학강습기관의 세부적인 교육과정은 다음의 제6조 [교육과정]의 [별표(교육과정표)]와 같이 제시되었다. 동법시행규칙은 문교부령 제236호(1969. 7. 19) 및 문교부령 제369호(1975. 11. 5)로 개정되었지만, 그 내용은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표 1〉 [별표] 교육과정표

필수 과목	도서관의 조직 및 관리, 도서관사, 목록법, 분류법, 도서선택, 참고업무 및 일반참고자료
선택 과목	도서관학개론, 서지학개론, 도서관과 사회, 도서 및 인쇄사, 저작권법, 고서목록법, 비도서자료, 도큐멘테이션, 인문과학서지, 사회과학서지, 자연과학서지, 한국서지, 시청각자료, 근세한국주제별사료, 사서실습

비고: 1. 령 제4조 제2항 제2호 및 동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택과목 중 3과목을 과한다.
 2. 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수과목을 면제하고 선택과목중 5과목을 과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는 처음부터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이 너무 전문성이 부족하게 규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그 당시 상황이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시대이어서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도서관수와 문헌정보학과 졸업생수를 비교해보아도, 처음부터 대학이나 대학원 이상의 수준으로 사서자격을 부여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2. 『도서관법』의 개정(1987)과 이후의 시기

1963년에 제정된 『도서관법』을 1987년 11월 28일에 전면 개정한 『도서관법』(법률 제3972호) 제7조 제1항에서는 도서관운영을 위해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를 두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동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사서직원을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로 구분하였다.

“제7조 [사서직원 등] ①도서관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를 두어야 하며, 사회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 등은 1급 정사서·2급 정사서 및 준사서로 구분하며, 그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어서 1988년 8월 16일 제정된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06호) 제5조 제1항의 [별표 3]에서는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표 2〉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자 격	자 격 요 건
1급정사서	1.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2.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3.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 기타 문교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한다)에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 을 이수한 사람
2급정사서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도서관학과 또는 문헌정보학과를 졸업 한 사람 2.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4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6.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준사서	1. 전문대학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2. 전문대학(중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을 부전공한 사람

비고: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서의 근무경력은 당해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이 110제곱미터·자료가 1천 500권(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표에 의한 도서관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전술한 도서관법시행령에 대해 1989년 3월 25일자로 제정·공포된 『도서관법시행규칙』(문교부령 제570호) 제7조 [사서자격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8조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사서직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규정하였다. 즉, 사서자격 교육기관은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부설하는 기관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1호)

러한 지정교육기관의 세부적인 사서자격 교육과정은 [별표]와 같이 제시되었다.

〈표 3〉 [별표]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

자 격	필수과목	선택과목
1급정사서	도서관평가론 비교도서관학 도서관정보협력체계론 도서관시스템분석론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박사학위과정에서 선택
2급정사서	도서관과 사회 장서개발론 자료조직론(II) 주제별정보자료론 정보검색론 도서관경영론(II) 도서관자동화론	대학의 도서관학과 또는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에서 선택
준사서	도서관·정보학개론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자료조직론(I) 비도서자료론 참고봉사론 도서관경영론(I)	전문대학의 도서관과 또는 문헌정보과 교육과정에서 선택

비고: 필수과목중 (I)의 내용은 기초과정, (II)의 내용은 심화과정을 다룬다.

3. 『도서관진흥법』(1991)의 시기

『도서관법』의 대체법률로서 1991년 3월 8일자로 제정된 『도서관진흥법』(법률 제4352호)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342호) 제5조 제1항의 [별표 3]에서는 이러한 사서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종전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였다. 즉, 도서관진흥법 제6조는 모두 3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 『도서관법』 제7조의 제1항과 제2항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3항을 추가하였다.

- “제6조 [사서직원 등] ①도서관법 제7조 제1항과 동일
 ②도서관법 제7조 제2항과 동일
 ③국가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서직원 등의 연수 기타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어서 1991년 4월 8일 제정된 『도서관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342호)에서도 기존 도서관법시행령에서와 같이 제5조 제1항의 [별표 3]에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사

서직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별표 3] 내용 가운데 소속행정부처의 변경에 따라 '문교부령'과 '문교부장관'이 '문화부령'과 '문화부장관'으로 수정되었고, 국내 각 대학의 도서관학과가 거의 대부분 문헌정보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이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으로 순서를 바꾸어 기술하였다. 이와 함께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서직원이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도서관에 근무해야 하는 경력을 4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단축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진흥법시행령에 대해 1991년 7월 16일자로 제정·공포된 『도서관진흥법시행규칙』(문화부령 제7호) 제7조 [사서자격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도서관법시행규칙』제7조 [사서자격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8조[교육과정] 가운데 사서자격교육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만 남겨두고 사서직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을 다음의 별표와 같이 규정하였다. 즉, 동법시행규칙에서는 종전의 법규에 의거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부설한 사서자격 교육기관(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1965년 문교부>, 계명대학교 사서교육원<1989년 문교부>)을 인정하였지만, 동시에 이러한 사서자격 교육기관의 추가 지정에 관한 내용 및 신청양식을 삭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 절차의 정당성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1997년에 문화체육부는 부산여자대학 부설 사서교육원을 사서자격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별표]에서 제시한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에서 기존의 교과목외에 필수과목으로 각급 자격별로 저작권 교과목<저작권(I), 저작권(II), 비교저작권론>이 추가되었다.

4. 『도서관및독서진흥법』(1994)의 시기

1991년에 제정되었던 『도서관진흥법』이 폐지되면서, 1994년 3월 23일자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법률 제4746호)이 제정·공포되었다. 이어서 1994년 7월 23일자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39호)이 제정되었고, 1994년 8월 12일자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문화체육부령 제16호)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342호)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존 『도서관진흥법』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면서, 독서진흥을 위해 다음과 같이 문고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였다.

- “제6조 [사서직원 등] ①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1항과 동일
 ②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2항과 동일
 ③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3항과 동일
 ④문고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은 기존 『도서관진흥법시행령』에서와 같이 제5조 [별표 3]에서는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각각 규정하였다. 여기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별표 3]의 변경 내용은 기존 내용에서 2급 정사서 자격요건으로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및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추가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그 소속 행정부처의 변경에 따라 ‘문화부령’과 ‘문화부장관’이 ‘문화체육부령’과 ‘문화체육부장관’으로 수정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문화체육부령 제16호) 제7조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조문 내용은 이전의 『도서관진흥법시행규칙』과 같다. 단,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서 제시한 사서자격교육과정의 교과에서 기존의 교과목외에 필수과목으로 준사서 및 2급 정사서 자격요건으로 독서지도 교과목<독서지도(I), 독서지도(II)>이 추가되었다.

5.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개정(2003)과 이후의 시기

2003년 5월 29일자로 기존의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법률 제6906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11월 27일자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44호)이, 2003년 12월 2일자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82호)이 각각 개정되었다. 여기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6조에서는 기존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반영하였으며,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제5조에서도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내용은 직전 시행령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3월 17일자로 다시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된 동법시행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은 기존 『도서관진흥법시행령』에서와 같이 제5조 [별표 3]에서는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각각 규정하였다. 여기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별표 3]의 내용은 소속 행정부처의 변경에 따라 ‘문화체육부령’과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관광부령’과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수정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82호) 제7조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조문 내용은 이전의 법규와 같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서 제시한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도서관법』(2006)의 시기

2006년 10월 4일자로 전부 개정·공포된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7년 3월 27일자로 『도서관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9963호)이, 2007년 4월 4일자로 『도서관법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161호)이 제정·공포되었다. 여기서 『도서관법』제6조에서는 기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유지하면서 대폭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6조 [사서직원 등] ①도서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을 둘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도서관법시행령』제4조에서는 기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의 제4조 및 제5조를 합쳐서 하나의 조문으로 정리하였다. 즉,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제4조 [별표 2]의 ‘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 및 제5조 [별표 3]의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도서관법시행령』제4조에서 함께 규정하였다. 하지만, 2007년 4월 4일자로 제정·공포된 『도서관법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161호)에서는 지금까지 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여 왔던 기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제7조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을 삭제하였다. 이처럼 법령개정에 따라 삭제된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은 『문화관광부 고시』제 2007-9호(2007년 4월 11일)에 의거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으로 고시되었다. 이 고시에서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내용은 기존 내용과 동일하며, 이수학점은 30점으로 하되, 1학점은 16시간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4조 [사서직원 등] ①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②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3과 같다.
-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도서관법시행령』제4조 제2호의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2008년 6월 5일 대통령령 제20797호에 의거 원격교육 등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표 4〉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자 격	자 격 요 건
1급 정사서	1.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 2.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자 3.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한다)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 을 이수한 자
2급 정사서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 고등교육법 』 제2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2.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6.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준사서	1.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 2.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중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

비고: 법 제31조 제1항과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공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해당 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이 11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자료가 1천500권(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1천50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표에 따른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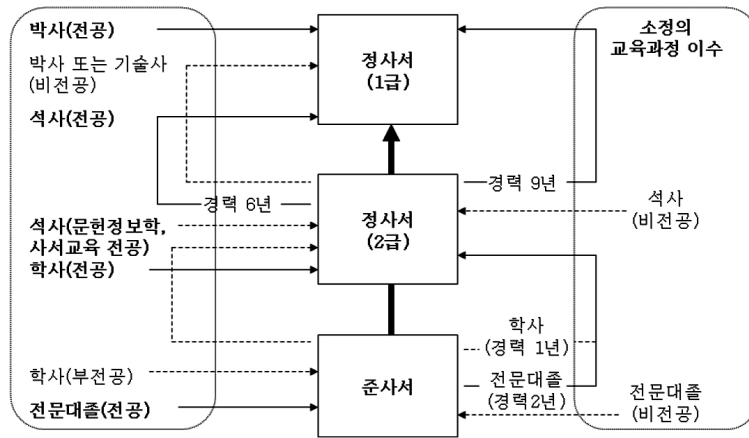
IV. 사서자격의 취득 요건 및 양성 체계

1. 사서자격 취득과 교육 체계

현재 국내의 사서인력 양성기관은 4년제 학부과정인 33개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각각 27개교와 15개교, 대학 부설의 사서교육원 2개교 및 전문대학 부설의 사서교육원 1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2007학년도에 나사렛대학에 점차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었고, 6개 전문대학(대림, 동원, 부산여자, 숭의여자, 인천전문, 창원전문)의 문헌정보과에서도 준사서를 양성하고 있으며, 부산여자대학은 1997년부터 사서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매년 양성되는 사서직 인력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원의 졸업자들을 제외하고도 2,000여 명

에 이를 정도로 양성되고 있다.⁷⁾ 이를 포함한 2008년도 전체 사서자격증 발급자수는 <표 6>에서와 같이 2,41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사서자격제도에 적용되는 실정법은 2006년 10월 4일자로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법률 제 8029호) 및 2007년 3월 27일자로 개정된 『도서관법시행령』(제19963호)이다. 동법 제6조 제2항에 근거한 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3]에서는 1급 정사서의 자격요건으로 4가지, 2급 정사서는 7가지, 준사서는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1급 정사서는 어느 전문직의 자격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손색이 없으며, 준사서로부터 출발하여 1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다음의 <그림 1>과 같이⁸⁾ 적정한 근무경력이나 일정수준의 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그림 1> 사서자격증 취득과정

특히 1970년도 후반부터 1980년도 초반에 <표 5>에서와 같이 전국적으로 25개 대학(현재 33개 교에 설치)에 문헌정보학과(전자문헌정보학과 포함)가, 3개 전문대학(당시 8개교에 설치되었으나, 현재 2개교는 폐과됨)에 문헌정보과가 집중적으로 창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비율은 대학의 경우에 78%, 전문대학의 경우도 37%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문헌정보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33개 대학들 중에서 75%에 달하는 28개교에서 일반대학원과정(석사/박사과정)을 설치하고 있고, 교육대학원과정의 경우에도 50%에 이르는 16개교(학부과정 없는 한양대학교 포함 17개교)에서 설치하고 있다.

7) 광동철, “학부제 하에서 문헌정보학전공의 학부구성 및 사서 자격 인정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3권 제4호(1999. 12), pp.157-182.

8) 윤희운 등, 사서직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4), p.152.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1호)

〈표 5〉 사서의 정규 교육 및 양성 기관(학부, 대학원 등) 현황

(2008년 12월 현재)

대학(교)명	학부 설치연도	대학원설치연도		교육대학원 설치연도	사서교육원 설치연도	기 타
		석사	박사			
1. 강남대학교	1978	2005				
2. 건국대학교	1984					
3. 경기대학교	1983	1999	2001	1998		
4. 경북대학교	1974	1978	1999			
5. 경성대학교	1983	2005				
6. 계명대학교	1980	1989	1999	1998	1989	
7. 공주대학교	1983			1987		문헌정보교육과
8. 광주대학교	1984	2008				
9. 나사렛대학교	2007					접자문헌정보학과
10. 대구대학교	1982	1997		2000		
11. 대구가톨릭대학교	1976	1997		2003		도서관학과
12. 대전대학교	1991	2001		1997		
13. 덕성여자대학교	1980					
14. 동덕여자대학교	1980	1996				
15. 동의대학교	1982					
16. 명지대학교	1980	1989	2008	1994		
17. 부산대학교	1984	1989	1993	2000		
18. 상명대학교	1980	1980	1993	1994		
19. 서울여자대학교	1980	1988				
20. 성균관대학교	1964	1971	1974	1999	1965	
21. 숙명여자대학교	1976	1983	2006	1982설치,1999폐지		
22. 신라대학교	1979			1998		
23. 연세대학교	1957	1957	1980	1979폐지,2003신설	1957설치, 1971 폐지	한국도서관학당
24. 이화여자대학교	1959	1959	1987	1999폐지		
25. 전남대학교	1980	1992	1998	2004		
26. 전북대학교	1980	1999	2002	2000		
27. 전주대학교	1983	1994				
28. 중부대학교	1994	2005		2003설치,2005폐지		
29. 중앙대학교	1963	1972	1983	1997		
30. 청주대학교	1979	1984		1995		
31. 충남대학교	1979	1991	2001			
32. 한남대학교	1981	1997				
33. 한성대학교	1981	1998	2006			
(한양대학교)				1980		폐지예정(모집중지)
소 계	33(1)	27	15	16(1)	2	
1. 대림대학	1994					
2. 동원대학	1997					
3. 부산여자대학	1970				1997	전공심화과정설치
4. 숭의여자대학	1972					전공심화과정설치
5. 인천전문대학	1981					
6. 창원전문대학	1980					
(계명문화대학)	1974					폐과
(동부산대학)	1979					폐과
소 계	6				1	

〈출전〉 박동철, “학부제 하에서 문헌정보학전공의 학부구성 및 사서 자격 인정에 관한 고찰,” p.177의 〈표 5〉 및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내부 자료 2008년 전국 사서양성기관 현황조사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함.

또한 이처럼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된 국내 33개 대학에서는 기존의 부전공제에 의한 준사서 자격 취득 및 학부제의 시행과 함께 타 전공에 소속된 학생들이 문헌정보학을 복수전공함으로써 2급 정사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어, 실제로는 각 학과의 정원 이상으로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고 있다. 더욱이 성균관대학교, 계명대학교 및 부산여자대학은 정규 교육과정이지 아닌 사서교육원이라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1급과 2급 정사서, 준사서 및 사서교사 양성 교육을 통해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양산하고 있다.

2. 사서자격증 발급 및 소지 현황

국내에서 사서자격증은 전문대학의 문헌정보과, 대학 문헌정보학과(전공) 또는 도서관학과(전공),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학위과정, 사서교육원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서자격제도가 법제화되어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한 1966년부터 2008년까지의 발급 현황은 <표 6>과 같이 총 66,057명이며, 자격증별로 누적 인원수 및 비율은 1급 정사서 1,526명(2.3%), 2급 정사서 37,917명(57.4%), 준사서 26,614명(40.3%)이다.

<표 6> 사서자격증 종별 발급 현황

(2008년 12월 현재)

연 도	자격증의 종류				소 계	누 계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갱신**	준사서		
1966~75		1,410		1,251	2,661	2,661
1976		212		305	517	3,178
1977		132		428	560	3,738
1978		144		491	635	4,373
1979		176		609	785	5,158
1980		268		685	953	6,111
1981		368		685	1,053	7,164
1982		226		814	1,040	8,204
1983		389		1,078	1,467	9,671
1984		579		873	1,452	11,123
1985		1,014		835	1,849	12,972
1986		1,248		633	1,881	14,853
1987		1,459		719	2,178	17,031
1988		1,558		732	2,290	19,321
1989		1,653		712	2,365	21,686
1990*	63	1,516		580	2,159	23,845
1991	54	1,587	(30)	774	2,415	26,260
1992	140	1,510	(1,611)	678	2,328	28,588
1993	100	1,467	(2,345)	841	2,408	30,996

(표 6 계속)

연 도	자격증의 종류				소 계	누 계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갱신**	준사서		
1994	43	1,376	(31)	663	2,082	33,078
1995	51	1,353	(14)	758	2,162	35,240
1996	58	1,358	(17)	854	2,270	37,510
1997	43	1,255	(10)	719	2,017	39,527
1998***	35	1,310	(18)	783	2,128	41,655
1999	88	1,405	(16)	896	2,389	44,044
2000	55	1,396	(19)	986	2,437	46,481
2001	80	1,368	(24)	920	2,368	48,849
2002	75	1,471	(14)	984	2,530	51,379
2003	106	1,381	(28)	949	2,436	53,815
2004	96	1,420	(33)	1,030	2,546	56,361
2005	81	1,418	(26)	917	2,416	58,777
2006	105	1,449	(18)	841	2,395	61,172
2007	138	1,532	(12)	801	2,471	63,643
2008	115	1,509	(25)	790	2,414	66,057
계	1,526	37,917	(4,291)	26,614	66,057	-

〈출전〉 상기 표의 수치는 한국도서관협회 및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내부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1990년부터 정사서 자격증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함.

** ()안은 종전의 정사서 자격증을 2급 정사서 자격증으로 갱신 발급한 숫자임.

*** 1998년 8월 11일자로 제정·공포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 15,864호)에 의거하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업무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도서관협회로 이관되었음.

사서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현재 도서관계 종사자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2007년 12월말 현재까지 사서자격증을 발급 받은 63,643명 가운데, 현재 도서관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10,320명으로, 자격증 소지자의 약 16%에 해당한다.⁹⁾ 물론 나머지 84% 안에는 사서직에서 이미 은퇴하거나 전직한 사람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현직 종사자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2007년 12월말 현재 국내 도서관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 16,289명 가운데 사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3%로, 삼분의 이 정도이다. 〈표 7〉은 도서관의 관종별 직원 수 및 사서자격증 소지자의 수를 보여주는데, 사서직으로는 공공도서관 3,028명, 대학도서관 2,644명, 전문도서관 1,040명, 학교도서관 3,151명, 국립중앙도서관 254명 및 국회도서관에서 203명이 각각 일하고 있다.

9)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7).

〈표 7〉 도서관 관종별 직원수 및 사서자격증 소지 현황

(단위 : 명)

구 분	관종별	사서직				행정직	기타	계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소계			
공공도서관	2,743*				1,060	2,791	6,594	
	211	2,189	628	(3,028)				
대학도서관	2,408				485	811	3,704	
	511	1,823	310	(2,644)				
전문·특수도서관	984				573	713	2,270	
	116	735	189	(1,040)				
국립중앙도서관**	177				38	87	302	
	28	159	67	(254)				
국회도서관	158				50	60	268	
	18	127	58	(203)				
소 계	6,470				2,206	4,462	13,138	
	884	5,033	1,252	(7,169)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사서	비정규사서	(3,151)	-	-	3,151	
	537	62	2,552					
총 계	(10,320)						16,289	

〈출전〉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서울: 동 협회, 2007) 및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내부자료(2008년 9월말) 참조.

* 사서직 수와 각 자격증 종별 소계의 차이는 도서관의 행정직 및 기능직 종사자 가운데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있기 때문임.

** 국립중앙도서관의 직원수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수치를 합산한 것임.

3. 사서의 양성과 취업 문제

우리나라 사서직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1957년부터 4년제 및 2년제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어 왔고, 매년 배출되는 사서자격증 소지자의 수가 2,000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 같은 사서자격증 소지자의 양산은 실제적인 사서직원 채용의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공급의 과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사서자격증 소지자들은 공채 시험 등을 통해 각 관종별 도서관의 공무원 또는 민간인 신분의 사서직원으로 취업하거나 교사 임용시험을 거쳐 초·중등학교의 사서교사 등으로 채용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알리미 사이트에 나타난 정보에 의하면¹⁰⁾ 매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는 사서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은 19.6% 정도로 실질적 취업률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취업자 가운데 상당수가 비정규직, 임시직, 기간제 등으로 취업하고 있어, 사서로서의 정규직 취업률이 매우 낮은 형편이다.

10)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는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가 대학공시제도와 관련하여 수집·정리·발표하고 있는 다양한 통계자료이다. 대학정보공시는 학생, 학부모, 산업체, 정부 등의 학교 선택, 산학협력 및 직원채용, 정책집행 시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하여 대학의 주요 정보를 수요자의 관점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별 취업통계시스템은 계속 보완을 해야겠지만, 각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을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물론 바람직한 방법은 주무 부처 또는 기관이 사서자격증 관리시스템을 확충하여 사서자격증 발급자의 취업 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력 수급 전망 및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취업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심각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대학의 문헌정보학 혹은 도서관학의 정규 교육과정 외에 사서를 배출하는 단기 프로그램인 사서교육원의 계속적 존치 및 신규인가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초반 새로운 학문이 처음 유입되는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될 목적으로 설립된 사서교육원이라는 단기 프로그램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충분한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는 지금까지도 존속될 뿐만 아니라, 이 후에도 이를 신규로 설치하는 대학이 생겼다는 것은 사서 교육 및 양성과 관련하여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현재 대학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사서교육원 가운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기관은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이다. 이 기관은 1963년 국내 최초의 『도서관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각급 도서관의 설립이 촉진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사서직원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게 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단기 교육과정을 통해 사서를 양성하기 위해 그 당시 문교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것이다. 한국사서교육원의 졸업생은 2007년까지 총 7,645명이며, 자격종별 현황은 <표 8>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¹¹⁾

<표 8> 한국사서교육원 졸업생 통계표('65~'07)

과 정 학년도	정사서		준사서	사서교사	문헌관리	계
	1급정사서	2급정사서				
1965		64	10			74
1966		22	10			32
1967		15	11			26
1968		9	13			22
1969		9	15			24
1970		10	20			30
1971		13	22			35
1972		28	27			55
1973		27	30			57
1974		27	46			73
1975		34	40			74
1976		46	56			102

11) 박동철, “학부제 하에서 문헌정보학전공의 학부구성 및 사서 자격 인정에 관한 고찰,” p.178 및 한국사서교육원 요람(2008~2009), pp.73-74를 참조하여 작성함.

(표 8 계속)

과 정 학년도	정사서		준사서	사서교사	문헌관리	계
	1급정사서	2급정사서				
1977		51	61	6	55	173
1978		93	139	8	58	298
1979		118	132	28	204	482
1980		151	218	60	185	614
1981		153	120	30	2	305
1982		53	157	30		240
1983		43	137	45		225
1984		66	138	72		276
1985		96	128	58		282
1986		112	112	68		292
1987		97	96	63		256
1988		115	96	60		271
1989				49		49
1990		70	149	31		250
1991	12	52	149			213
1992		41	105			146
1993	6	45	101	32		184
1994		44	141			185
1995		45	92			137
1996	9	46	86	20		161
1997		40	103			143
1998	10	36	102	40		188
1999	8	30	95			133
2000	9	31	100			140
2001	10	35	101			146
2002	6	30	113			149
2003	6	44	145			195
2004		46	143			189
2005		52	187			239
2006		56	186			242
2007		55	183			238
계	76	2,250	4,115	700	504	7,645

그 동안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이 양성한 사서직 인력의 규모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5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7,645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76명의 1급 정사서, 2,250명의 2급 정사서, 4,115명의 준사서 및 700명의 사서교사가 배출되었다. 이러한 수치에 근거하면 상 기 한국사서교육원 한 곳에서 현재 사서자격증 소지자 누계 66,057명 가운데 사서교사를 제외하 고 6,441명이 양성되어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적어도 5~6개 대학 졸업생 규모

의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사서교육원이 1960년대 당시 사서직원의 신속한 양성에 대한 수요를 일시적으로나마 충족시키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도서관계에 유입될 수 있게 했다는 공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초기의 한시적 설치 목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정규 교육과정마저 수요 이상의 공급 과잉이라는 문제가 발생한 지금까지도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사서직의 양성과 도서관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대학차원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 유지된다는 우려가 크다고 하겠다. 더욱이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의 존치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989년 계명대학교와 1997년 부산여자대학에 사서교육원이 추가로 설치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3개 사서교육원의 최근 3년간 졸업생 현황을 살펴보면 <표 9>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9> 최근 3년간 사서교육원 사서자격 취득 현황

과 정		정사서		준사서	계	비고
		1급정사서	2급정사서			
학년도						
성 균 관 대	2006년		52	187	239	
	2007년		56	186	242	
	2008년		56	184	240	
소 계			164	557	721	
계 명 대	2006년		7	41	48	
	2007년		5	44	49	
	2008년		9	43	52	
소 계			21	128	1,591	
부 산 여 대	2006년	9		30	39	
	2007년		7	36	43	
	2008년		13	35	48	
소 계		9	20	101	0	
총 계		9	205	786	1,000	

이처럼 사서직 양성을 위한 단기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의 의의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1957년에 도서관 현장에 근무 중인 도서관 직원의 재훈련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설치된 연세대학교 부설 '한국도서관학당'의 사례를 보면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한국도서관학당의 당초계획은 대학에 설치된 도서관학과 졸업생이 배출되는 1961년까지 4년간만을 존속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사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재훈련을 받지 못한 현직 도서관 직원이 많이 남아 있다는 도서관계의 요망에 의해 예정보다 10년을 더 연장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1971년 초에 중단하였다.

이러한 전례를 보더라도 현재 사서자격제도의 제 문제와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점에서 사서자격증 소지자의 양산이라는 문제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서교육원의 계속 존치 여부는 지금부터라도 공론화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원에 문헌정보학 박사과정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의 사서교육원이 1급 정사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전문직 교육의 부실화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사서자격증 등급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편중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부산의 경우에는 4개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부산여자대학에 사서교육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강원과 제주에는 정규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사서교육원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소관 행정부처에서 이를 처음 인가할 때 상기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이러한 사서교육원 문제는 소관 행정부처와 전문직 단체가 협력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나 진단 후 이를 폐지하거나 재교육기관으로 전환 또는 유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서자격제도의 전면적 개선과 더불어 사서직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보호, 도서관계의 상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다.

V. 결 론

우리나라는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전공자에게 졸업과 동시에 사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서자격제도에 대한 개선 논란은 학계와 도서관 실무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서자격제도가 1963년에 법제화된 이래 거의 40여 년간 국가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결함과 모순을 갖고 있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어 왔다. 이미 문헌정보학계 및 도서관계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학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사서자격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거론되어 왔고, 그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¹²⁾ 더욱이 대학의 학부제 실시와 함께 자격 부여 방법에 있어서 30~36학점 정도의 전공을 이수한 자에게 사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은 현행 제도의 내·외적 제반 측면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 사서직이 스스로 전문직이라고 주창하지만, 사회적으로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외형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요건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사서직이 이러한 인식을

12) 남태우, "사서직의 전문성과 국가고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제3회 한국정보관리학회 논문대회 논문집(1996), pp.115-118 ; 김세훈, 2004. 『도서관 전문성 강화 방안: 사서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

탈피하고 사회에서 명실상부하게 전문직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서직의 지식기반과 교육제도 및 자격제도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현장, 그리고 전문직단체로서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긴밀히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¹³⁾

따라서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방향은, 우선 사서자격제도 개선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서자격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한 후, 그 결과를 보완하여 국가차원의 선진화된 사서자격제도 및 체계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을 통해 문화강국화 구현을 위한 질적이고 양적인 도서관의 성장 및 국가적 차원의 도서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을 위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도서관 관련 법규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서의 학력 및 경력 중심의 자격제도를 인증 제도를 통해 보완하면서, 사서직의 진입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여 개방형 체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요 선진국에서와 같이 사서직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대학원 중심의 자격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중심이 되어 학계와 현장 및 이용자의 충분한 의견 개진과 토론을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동철. “학부제 하에서 문헌정보학전공의 학부구성 및 사서 자격 인정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3권, 제4호(1999. 12), pp.157-182.
- 곽동철. “사서자격 제도의 변화 추이 및 개선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8 동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대구: 경북대, 2008. 11. 28-29), pp.1-35.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60년사.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6.
- 김세훈. 도서관 전문성 강화 방안: 사서 전문성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 남태우. “사서직의 전문성과 국가고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제3회 한국정보관리학회 논문대회 논문집. 1996, pp.115-118.
- 윤희윤 등. 사서직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4.
- 이병목. 도서관법규총람. 전2권. 서울 : 구미무역출판부, 2005.
- 이제환 외 4명.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현장 사서의 평가와 요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13) 이제환 외 4명,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현장 사서의 평가와 요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4호(2005. 12), p.46.

제4호(2005. 12), pp.45-69.

정동렬. “사서자격제도 개선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07. 6), pp.5-29.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60년사.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5.

日本図書館情報學會. “情報専門職の養成に向けた図書館情報學教育体制の再構築に関する総合的研究.” 最終報告書. 2006.

〈<http://www.soc.nii.ac.jp/jslis/liper/report06/report.htm>〉.

郭東哲. “韓國的司書培養體系和資格制度.” 圖書情報工作, 第52卷, 第6期(2008. 6), pp.22-28.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accredited Programs.”

〈<http://www.ala.org/ala/educationcareers/education/accreditedprograms/index.cfm>〉.

ALA. “Guidelines for Choosing a Master’s Program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http://www.ala.org/ala/educationcareers/education/accreditedprograms/guidelinesforchoosing/index.cfm>〉.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ALIA). ALIA Recognition of Courses: Criteria for the Recognition of First-award cours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Management at Librarian and Library Technician Level.

〈<http://www.alia.org.au/education/courses/criteria.html>〉.

Gorman, Michael. “What Ails Library Education?”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30, No.2 (2004), pp.99-101.

Tammaro, Anna Maria. “A Curriculum for Digital Librarians: A Reflection on the European Debate.” *New Library World*, Vol.108, No.5/6(2007), pp.229-246.